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나. 발 의 자: 박현우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박현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아동과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하고, 관내 아동·청소년이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·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과학인재 양성사업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발급 및 신청과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
- 이용권 발급대상 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동·청소년의 과학문화이용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관내 아동·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5조(지원)에서 과학육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안 제6조(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)에서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함)에 대해 정의함.
 - 안 제7조(이용권의 발급)는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돼 있으면서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초등학교·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7세 이상 15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함.
 - 안 제10조(이용권 발급대상 관리)는 이용권 발급대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·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, 안 제11조(전산시스템의 운영)는 이용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검토 결과
 - 4차 산업혁명 이후 과학적 소양 중심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는 과학문화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.
 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영등포구만이 과학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

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, 특히 우리 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, 국립 과천과학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미래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.

- 본 조례안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으로서 관내 아동·청소년에 대해 과학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이며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, ‘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지원’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임.

-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‘과학문화바우처’ 사업이 있으나 ‘과학문화바우처’ 사업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·경제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전시·도서·키트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·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,

본 안건에서 신설하고 있는 ‘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’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·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, 국·공립 과학관 등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 이용 등 경험적 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관이나 전시관 같은 과학교육 관련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관내 학생들이 과학문화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,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체험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험적 상품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안 제7조에서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건이 초등학생·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연령 내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본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

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여 이들이 향후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
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박현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0. .
발 의 자: 박현우 의원
찬 성 자: 유승용, 이규선, 이순우
의원(3인)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아동과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하고, 관내 아동·청소년이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·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과학인재 양성사업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발급 및 신청과 사용에 관한 사항

(안 제6조~제9조)

마. 이용권 발급대장 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10조~제11조)

바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10. 13. ~ 10. 17.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임과 의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 내 과학육성을 위하여 과학인재 양성, 과학문화 확산 등의 과학육성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3조(과학인재 양성사업) 구청장은 지역 내 과학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초·중·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
2. 학술발표회 및 과학관련 세미나 개최
3.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과학문화 확산사업) ① 구청장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활과학교실 활성화
2. 과학 축제 및 과학 동호회 지원 사업

3.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

4. 국내외 우수 전람회·전시회 관람 및 유치

5. 주민들의 과학이해증진 사업

6. 과학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

7.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, 연구기관, 학교, 산업체,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) ①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역학생 및 주민들에게 제3조와 제4조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교육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)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이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제7조(이용권의 발급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이용권 발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외국인

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2.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(다만,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,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

제8조(이용권의 신청 등) ① 이용권은 대상 아동·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이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9조(이용권의 사용 등)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은 이용권을 사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국·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·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용권 사용장소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용권 발급대장 관리)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전산시스템의 운영) 구청장은 이용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

위하여 이용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매우 큰 공로가 있는 자를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